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8항 규정 및 환경부 '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'에 따라 우리군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○ 평가대상 및 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○ 평가 지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, 7조)
○ 평가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○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(안 제11, 12, 13조)

4.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제8항
나. 예산조치 : 2014년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(10,000천원) 반영
다. 기타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4.10.14. ~ 2014.11.3)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(안)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실적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코자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,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와 평가결과를 업체에 통지 및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

○ 총 15조로 구성되었으며 평가대상 및 업무, 평가 지침 및 계획 수립, 평가방법,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

○ 따라서 “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”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마련 운영함으로서 투명성 확보와 함께 청소 서비스의 질 개선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○ 본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환경부 「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」에 적정하며,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시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이 적은 호프, 카페 등의 관련업계 불만 및 건의가 빈발

○ 이에, 영업장 면적 이외에도 업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업태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

○ “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”을 “일반음식점(음식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제외) 및 휴게음식점(주로 차류를 조리·판매하는 다방 및 빵·떡·과자·아이스크림류를 제조·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)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”으로 개정

나.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

4.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2, 제14조제1항, 제15조의2, 제68조제3항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,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3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타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4.10.14. ~ 2014.11. 3)
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(안)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의2 제1항 및 「폐기물관리법시행령」 제8조의4 제2호 규정에 따라 「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

○ 그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일반음식점 중 “음식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”과 휴게음식점 중 “차류를 조리·판매하는 다방 및 빵·떡·과자·아이스크림류를 제조·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”은 제외하고 또한 상위법 조항을 정비코자 내용입니다.

○ 본 조례 개정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적은 업태의 특성을 고려하고 민원 해소는 물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부응하고 또한 상위법에도 적정하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